

#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22,700,000	36,681,000
일반회계	1,116,689,000	33,500,670
특별회계	106,011,000	3,180,330
공기업특별회계	87,200,000	2,61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56,800,000	1,704,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400,000	912,000
기타특별회계	18,811,000	564,330
수질개선특별회계	7,457,000	223,7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06,000	87,18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290,000	8,700
치수사업특별회계	1,387,000	41,610
주차장특별회계	6,771,000	203,1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294,668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5,000,00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294,668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56,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